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9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여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용자금의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고
-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용자대상사업의 구체화(제8조제2항)
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” ⇒ “도시개발,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”으로 함
-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자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제10조제1항)
- 용자기관의 대상을 구체화(제10조의2제2항)
 - 용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·지방공단으로 함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발췌 : 따로 붙임

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, 제9조 및 제11조의 제목중 “기금자금”을 각각 “기금”으로 한다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

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에는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

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융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·지방공단에 한하며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용자대상) ①기금자금의 용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읍자할 수 있다	제8조(용자대상) ①기금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읍자할 수 있다
제9조(용자순위) 기금자금은 상·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, 도시도로사업(도시고속화, 도심우회도로사업 등), 농촌도로사업에 우선 읍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, 사업의 수익,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읍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자한다	제9조(용자순위) 기금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0조(용자조건) ①용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,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. 상·하수도사업 및 댐주변사업 : 연리6.5% 2. 여타사업 : 연리7.5% ②용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1. 내지 3. (생략)	제10조(용자조건) ①용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용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토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에는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용자약정 및 용자절차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	제10조의2(용자약정 및 용자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용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·지방공단에 한하며 용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
제11조(기금자금의 관리) ① 내지 ③ (생략)	제11조(기금의 관리) 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 ③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

□ 지방재정법

-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

□ 지방공기업법

- 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